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63829(본소), 2016다263836(반소) 판결 [보증채무금 · 위자료]

재판경과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63829(본소), 2016다263836(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51683(본소), 2016나51690(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가소11308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A

판결 선고 2017. 3. 9.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51683(본소), 2016나51690(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